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9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고민정·조인철·김영배

황명선 • 윤종오 • 박해철

김성회 · 김준형 · 강경숙

강준현 • 문정복 • 이성윤

김영호 · 김남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'천원의 아침밥'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.

최근 '천원의 아침밥'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돼 왔음에도,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거나혹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또한,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더욱 폭넓은 예산 •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유아교 육법」, 「학교급식법」에 근거해 유치원 및 초·중·고교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,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, 이 경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, 급식 시설·설비, 급식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제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영양·건강 증진 사업과 급식 지원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·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의 재정 여건, 급식 시설·설비, 급식 수요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2(영양・건강 증진 사업
	과 급식 지원 등) 국가와 지방
	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·건강
	증진을 위한 사업과 급식 지원
	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
	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
	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
	단체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
	교의 재정 여건, 급식 시설・설
	비, 급식 수요 등에 관한 의견
	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
	<u>영할 수 있다.</u>